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성희롱 예방 · 안전보건교육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성희롱 예방 · 안전보건교육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성희롱 예방 · 안전보건교육

이 책을 소개합니다.

- ◎ 이 책에서는 <장애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이 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 ◎ 정부(나라)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 ◎ 이 교육은 1년에 한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목차



1. (알기 쉬운)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요?	7
2. 직장 내 성희롱은 누가 하나요?	7
3.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7
4. 어떤 말이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하나요?	8
5.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9
6.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4
7. 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15

2. (알기 쉬운)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요?	17
2.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17
3.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일까요?	18
4.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24
5.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	30
6. 직장에서 다쳤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1
7.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32
8.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스트레칭	33

3. (실무자용)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39
2. 성폭력 vs 성희롱 판단기준	39
3.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유형	40
4. 직장 내 성희롱사례	40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	42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 안내	43

4. (실무자용) 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45
2. 산업재해 특성 및 현황	45
3. 재해 사례별 원인과 대책	46
4.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	51



알기 쉬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요?

- ◎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 성희롱을 당했을 때 나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 ◎ 직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은 누가 하나요?

- ◎ 사장님, 부장님, 회사 동료, 회사 선배나 후배 등 다양한 사람이 성희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남에게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성희롱 가해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3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 직장 안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분을 나쁘게 했거나,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의 성적인 말과 행동에 내가 따르지 않는다고 일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말이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하나요?



① 시각적 성희롱

- ◎ 알몸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는 것, 성기 등 몸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



② 언어적 성희롱

- ◎ 나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나의 성 경험을 물어보는 것, 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나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말도 성희롱입니다.



③ 신체적 성희롱

- ◎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만지는 행동은 성희롱입니다. 식사 때, 옆에서 술을 따라 달라고 하거나 성관계, 성추행을 하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1 성희롱 예
동성(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저는 남자인데 남자 동료들이 제 가슴을 만지며 "여자 가슴보다 크네?"라며 놀려요.



- ◎ 직장내 여자 상사가 여자인 제게 "가슴이 크다.", "못 생겼다."라며 외모를 가지고 놀려요.



- ◎ 남자 직원들끼리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을 갔는데, 저보고 바지를 벗으라고 하며 짓궂은 장난을 쳐요.

2

성희롱 예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 하는 일이
많습니다.



◎ 직장 상사가 나에게 자주
몸을 부딪치고,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 직장 상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입을
맞혔어요. 직장상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 직장상사가 식사 후, 함께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건 성폭력입니다.

3

성희롱 예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장 상사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 핸드폰 카메라로 제 뒷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예쁘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 점심시간 직장 상사가 야한
영상을 보며 저에게 같이
보라고 했어요.

4 성희롱 예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회사 사장님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첫 키스가 언제인지 물어 봤어요.



◎ 직장 선배가 제 외모를 가지고 자주 이야기 해요.



◎ 유부남인 제게 회사 여자 선배가 늦은 시간에도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5 성희롱 예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 내 신고하니 “자세히 설명해 봐라.”, “웃차림이 문제는 아니었냐?”라는 질문을 해서 더 수치감을 느꼈어요.



◎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저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성희롱 했던 가해자(행위자) 남성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요.



◎ 회사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게임이라며 허벅지에 손을 얹어 신고했더니, 회사는 제게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6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상대방에게 '싫어요.', '하지마세요.'란 말을 정확히 하세요.

메모

	내용
날짜 및 시간	2018.3.18.(목) 오후5시
옆에 있던 사람	1,000,000,000
무슨말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때 내 기분은?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말과 행동,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세요.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무원, 담당자에게 신고 할 수 있어요.



◎ 정부(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전화는 1366(여성의 전화), 1350(고용노동부), 1331(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7 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 성희롱이 일어나면 정부(나라)에서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거나, 직장에서 벌을 주게 됩니다. 벌을 주는 방법은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한다면 회사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바꿔주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회사에서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 쉬운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요?

- ◎ 회사에서 일의 순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배운 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 ◎ 작은 실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행동이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 ◎ 이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규칙을 이해하고, 잘 지킨다면 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 사고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고, 특히 1년 미만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 ◎ 회사가 크거나 작거나 크기에 상관없고, 일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 ◎ 건물을 짓는 공사장, 기계를 만지고, 위험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환경정리를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더 많을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하세요.

3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일까요?

1위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 복도를 청소하다가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목을 다쳤어요.



◎ 급식지원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물기 등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을 다쳤어요.

2위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 사무실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닦으려고 작은 의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 도서관 사서 보조로 근무하며 책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어요.



◎ 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 업무를 하다가 책상 위에 쌓여 있던 박스가 떨어져 이마를 다쳤어요.

3위 끼어서 다치는 사고



◎ 급식지원으로 일을 하며 밥과 국을 카트에 싣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4위 찢리고 베이는 사고



◎ 사무보조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손을 다쳤어요.



◎ 사무보조로 일을 하며 문서를 파쇄하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 급식보조 일을 하며 당근을 썰다가 칼날에 손을 베어서 손에 피가 났어요.



◎ 기부 물품 정리 및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쌓아놓은 무거운 상자에 손이 껴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 호텔 객실관리 업무 중,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박힌 못에 찢려서 손을 다쳤어요.

5위 부딪치는 사고



- ◎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업무를 하다가 주차장에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쳐 허리를 다쳤어요.



- ◎ 환경정리 일을 하며 문 뒤 쪽을 청소 하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쳐 다쳤어요.



- ◎ 급식보조 일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며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어요.

6위 기타 - 화학용품에 의한 사고



- ◎ 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을 잘못 사용해서 목과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요.



- ◎ 청소를 하던 중에 목이 말랐어요. 음료수병에 덜어 사용하던 세제를 잘못 마셨어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 ◎ 창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화학용품을 가지고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트렸어요. 깨진 병에서 가스가 나와 목이 아팠어요.

4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①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 ◎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보이면 바로 닦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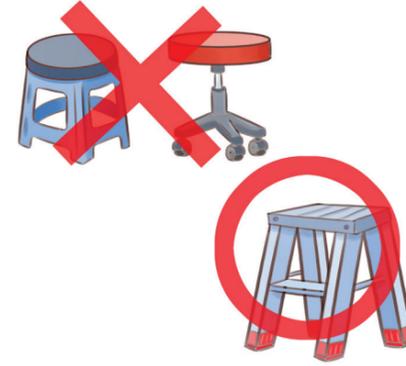


- ◎ 일을 하다가 어질러진 물건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정리해 주세요.



- ◎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슬리퍼보다는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신발을 신으세요.

②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 ◎ 형광등 청소를 하려고 바퀴달린 의자, 원형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갈 경우, 의자가 미끄러져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고정되어 있는 의자에 올라가세요.



- ◎ 책상 위쪽에 있는 책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넘어지기 쉬운 곳에 올라갈 때는 2명이 함께 도와 일을 하세요.



- ◎ 위에 쌓아둔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두세요.

③ 끼어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 ◎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는 물건만 쳐다보지 말고, 문이 닫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며 움직이세요.



- ◎ 기계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끄고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살펴보세요.



- ◎ 상자를 옮기며 일을 할 때는, 문에 손이 끼일 수 있어요. 그러니 문이 닫히지 않게 잘 고정하고 천천히 일하세요.

④ 찢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 ◎ 날카로운 칼, 가위 등을 사용할 때는 실수로 베이거나 찢릴 수 있으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하세요.



- ◎ 채소나 과일 등을 자를 때 손이 찢리거나 베일 수 있으니 베임 방지용 장갑을 착용하고 일하세요.



- ◎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고 아무데나 두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만 두고 사용하세요.

⑤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 ◎ 차가 많이 다니거나 어두운 곳에서 부딪히기 쉬우니 항상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며 움직이세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때는 2명이 함께 일하세요.



- ◎ 청소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청소중', '작업중' 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도 좋아요.



- ◎ 물건이나 가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주의' 표시를 해두고 항상 조심하세요.

⑥ 기타 화학용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 ◎ 화학용품을 사용하여 청소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주세요.



- ◎ 화학용품을 작은 용기에 덜어 사용할 때는, 용기에 크게 주의 표시를 붙여주세요.



- ◎ 화학용품을 사용하거나, 만질 때에는 마스크, 안전모자,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세요.

5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



- ◎ 직장 선배, 팀장님, 부장님 등에게 '아프다', '다쳤다' 는 상황을 알려주세요.

메모

	내용
날짜 및 시간	2018.3.18.(목) 오후5시
옆에 했던 사람	000,000,000
무슨일을 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다쳤나요?	

-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 시간, 장소,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등에 대해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7일)

- ◎ 일하다가 다쳤을 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에 말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무원,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6 직장에서 다쳤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아프거나 병에 걸린 경우 사용되는 병원비, 수술비, 약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쳐서 일하지 못한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병원에 입원하고 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하는데 드는 돈도 받을 수 있어요.
- ◎ 일하다가 다친 사고로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장해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산재 보험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월급
병원비
약값
장해비용

- ◎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회사는 다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 ◎ 회사는 일하다가 다친 사람에게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도 정부(나라)에게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8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왜 해야 할까요?

- ◎ 어깨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기전, 휴식시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 ◎ 스트레칭은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① 전신스트레칭 (기지개 켜기)

두 손을 깎지껴서 머리 위로 쭉 펴준다.



② 옆구리 스트레칭

기지개를 켜 후, 두 손을 깎지낀 채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굽힌다. 그리고 왼쪽으로 굽힌다.



③ 허리스트레칭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가슴을 넓게 피고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힌다. 그리고 앞으로 천천히 숙인다.



④ 팔 스트레칭 스트레칭

왼팔을 오른쪽 어깨쪽으로 뺀어 오른팔을 왼쪽 손목에 대고 가슴쪽으로 당긴다. 팔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본다.



⑤ 어깨 스트레칭

머리 뒤에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천천히 눌러준다. 팔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본다.



⑥ 손목 스트레칭

양팔의 힘을 빼고 손을 털어준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쪽 뺀어 왼손 손바닥을 오른손이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준다. 손을 바꾸어 반대로도 해본다.



⑦ 발목 스트레칭

다리를 어깨 넓이 만큼 벌리고 한 발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발목을 돌려준다. 안쪽 방향으로도 돌려준다.



⑧ 목 스트레칭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그리고 왼손을 머리에 올려 왼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⑨ 마무리

양팔을 편하게 아래로 뺀고 숨을 깊이 마셨다가, '후'하고 길게 내 뺀다. 심호흡을 10 번 한다.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실무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법정필수 교육 제도란?

법정 필수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년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사항임

교육명	법령	의무사항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라면 인원이거나,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표자 제외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예방과 관련한 규정/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대표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체인 경우 위 두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외부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음
산업안전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분기 3~6 시간 이상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 1인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의 근로자 : 매분기당 6시간 채용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타 업종 교육 시간의 1/2에 해당만큼 교육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예외 업종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 위탁 가능
퇴직연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제2항 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곳

법정 필수교육 별 개요

교육명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구성	기대효과	본사업 참여자 교육 연계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 의식을 제고 정보보안 생활화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정보를 보호·관리하며, 이를 업무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화 시대가 갖는 정보보호의 의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관계 및 의미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에 따른 규정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3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상범위를 법령체계에 준거하여 알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의식 향상 정보보안 생활화를 통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관리 가능 정보보안을 위한 실천방법을 숙지하고, 업무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직무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을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향후 교육 할 필요성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환경 구축 일상생활에서의 배려와 존중 성희롱의 개념 및 특징, 유형을 알고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인지 사례를 통한 성희롱의 유형을 알고 올바른 인식 제고 성희롱 예방 지침 및 법적 구제절차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성폭력 등의 개념을 인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함께 어우러져 일 할 수 있는 유쾌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음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희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과 예방법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1 인이상, 임시·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교육은 충분한 시간동안(1시간) 내실있게 진행 사업장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도 가능
산업안전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에 대한 목적과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요성 인지 산업안전보건교육법에 대해 습득하고 재해 발생시 대처방안 제시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10px;"> <p>채용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안내 작업개시 전 점검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일반관리 사항 등 </div> <div> <p>정기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관리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시 응급처치 등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교육의 체계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재해에 의한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음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발생 사례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응급처치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전수 채용시 1시간+분기별 3시간 교육 운영 해당업무 3년이상 종사자, 혹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운영 가능
퇴직연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 습득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 습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기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제도 유형별 특성에 대해 면밀히 파악 할 수 있음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실무자용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하급자도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ex) 가해자가 상급자 여성, 피해자가 하급자 남성이 될 수 있음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채용탈락, 감봉, 정직, 휴직, 해고 등)도 해당

2. 성폭력 vs 성희롱 판단기준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강간, 강제추행 등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육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농담을 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인터넷, 스마트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유형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p>• 알몸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는 것, 성기 등 몸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p>	 <p>• 나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나의 성 경험을 물어보는 것, 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나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말도 성희롱입니다.</p>	 <p>• 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만지는 행동은 성희롱입니다. 식사 때, 옆에서 술을 따라달라고 하거나 성관계, 성추행을 하는 행동도 성희롱입니다.</p>

4. 직장 내 성희롱사례

① 동성끼리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성인 구청 공무원에게 성희롱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직 방역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동성의 담당 공무원이 1달 전부터 다른 사람의 이목과 상관없이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 “가슴이 여자보다 큰데?”, “가슴이 B컵은 되겠어”라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자 다른 곳으로 불러내더니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떠들 일이나”라고 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힘들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생각하고 계약직이기는 하나 힘들게 취업을 해서 속으로 고민만 했는데 지속적으로 당하니 수치심에 잠도 못잘 정도로 힘들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②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해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상사가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여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접촉도 시도했는데, 상사를 잘 타일러서 “옷을 입어라, 빨리 나가자”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매우 불쾌했으나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참고 넘어갔는데 상사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인사과에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평소 평판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 회사에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상사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야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 한 명이 갑자기 핸드폰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았더니 20초 정도 되는 축구동영상인데, 남자 성기와 여자 가슴이 노출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상사는 방송에 나온 영상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교육을 받아보니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메신저로도 따졌습니다. 상사는 그냥 순간 포착한 영상이라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순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따져 물었더니 상사는 초등학교생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를 삼고 상사에게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면박을 줬습니다.

출처 : '2015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④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대표가 회식을 강요하더니 남녀 직원 모두에게 첫 경험을 물었습니다.”

입사한지 이틀 만에 겪은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지점을 방문했다가 회식시켜준다는 참여를 강요했습니다. 회식에서 직원들이 친한 사람끼리 앉으니 대표는 “그러지 말고 남녀 남녀끼리 앉는게 좋지 않겠냐?”며 섞어 앉게 하였습니다. 술을 권하여 제가 거절하였으나 옆에 있던 동갑인 남자직원이 저의 손을 잡게 하고 저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이성에게 키스하듯이 쪽쪽 빨면서 술을 마셔라”는 멘트를 계속 하였습니다. 대표는 여직원, 남직원 모두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고 묻고 자기 첫 경험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지지 않겠니?”라는 말을 하면서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출처 : '2015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⑤ 성희롱 피해를 신고 후,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성추행 사건 조사위원들이 가해자보다 더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종강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관련 조사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인 한 남자 교수가 “추행 장면을 시연해보라”고 해서 설명을 하였더니 “자세하게 어떻게 만졌는지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니, 옆에 있던 위원인 여자 교수가 “뭐하는 거냐, 사건을 알기 위해 묻는데 유두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은 “가슴이 너무 많이 드러난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소매 안으로 손을 넣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한마디씩 하는데 가해자에게 당한 것 보다 더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출처 : '2016 인권상담사례집' 차별행위 분야 중 성희롱사례. 국가인권위원회.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요령

-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
-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회사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이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급자 등에게 상담 및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 성희롱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 인터넷 www.moel.go.kr • 모바일 앱 M.moe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 1350 • 기타 상담기관 : 고용평등상담실(전국15개소) • 성폭력·성추행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	---

6.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 안내

법 적 근 거	법 안 내 용	과태료 및 처벌
성희롱 금지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 (제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3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14조의2 제 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제2항)

실무자용

안전보건교육 매뉴얼



1. 안전보건교육이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및 작업순서 즉, 작업표준, 작업절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스스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 끊임없이 반복되고 안타까운 사고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남
-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의식 변화 및 안전교육 필수
- 이에 직장 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고 기준임

2. 산업재해 특성 및 현황

구분	세부내용	
재해 현황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 수 : 90,656명	
재해자의 특성	근속 기간	6년 미만 근로자에서 55.3% 이상 발생 (신규입사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안전보건공단(2015)>
	사업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8% 발생 (5인 미만 : 29,540명, 32.6%, 5인~49인: 44,654명, 49.3%)
	연령	5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 (18세~24세 : 3,669명, 4.0%, 25세~34세 : 10,289명, 11.35%, 35세~44세 : 14,613명, 16.11%, 45세~54세 : 24,041명, 26.5%, 55세이상 : 37,958명, 41.9%)
사고 재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넘어짐(전도) 15,948명, 17.6% • 2위 : 떨어짐(추락) 14,679명, 16.2% • 3위 : 끼임(협착) 13,260명, 14.6% • 4위 : 절단·베임·찢림 8,541명, 9.4% • 5위 : 부딪침(충돌) 7,246명, 8.0% • 기타 	
질병발생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요통 2,737명, 34.8% • 2위 : 신체부담작업 2,098명, 26.6% • 3위 : 진폐 1,418명, 18.0% • 4위 : 뇌심질환 587명, 7.5% 	
업종별 재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 : 기타의 사업 29,692명, 32.8%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2위 : 건설업 26,570명, 29.3% • 3위 : 제조업 26,142명, 28.8% 	

<출처 : 「2016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2017).>

3. 재해 사례별 원인과 대책

1위 넘어짐(전도)

재해사례	복도를 청소하다가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짐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급식지원 업무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 다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움 일반 슬리퍼를 신고 업무수행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 등 작업이 끝나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닦아주고 정리 미끄럼 방지 신발, 매트 등 사용. 작업 중에는 슬리퍼 신지 않기 		
재해 예방 및 대책			

2위 떨어짐(추락)

재해사례	사무실 복도에 있는 창문을 닦으려고 작은 의자에 올라갔다가 의자가 넘어져 떨어져 다침	도서관 사서 보조로 근무하며 책을 정리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침	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 업무를 하다가 책상 위에 쌓여 있던 박스가 떨어져 다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의자, 바퀴달린 의자 등에 올라갈 경우,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지기 쉬움 사다리 등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뎈 미끄러지기 쉬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떨어져 다칠 수 있음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높은 곳을 청소할 경우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사다리 등 적절한 도구사용 넘어지기 쉬운 곳에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2인 1조로 청소하기 물건들이 쌓여있을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 잘하기 		
재해 예방 및 대책			

3위 끼임(협착)

재해사례	급식지원으로 일을 하며 밥과 국을 카트에 싣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어서 다침	사무보조로 일을 하며 문서를 파쇄하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다침	기부물품 정리 및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쌓아놓은 무거운 상자에 손이 껴서 다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문, 승강기 문 이용시 무거운 물건에 집중하여 전후좌우를 잘 보지 못하면 끼이기 쉬움 기계를 사용할 때 험령한 장갑을 끼거나, 잠시라도 산만하면 실수하여 위험해지기 쉬움 문제 발생시, 기계를 잠시 살펴보고 할 때 전원차단을 하지 않으면 다치기 쉬움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을 이동하고 나갈 때, 승강기 문, 자동문 등을 좌우 잘 확인하며 움직이기 기계를 사용할 때는 장갑, 머리카락, 넥타이 등이 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문제가 있을 경우, 전원을 끄고 정지된 상태에서 조치 		
재해 예방 및 대책			

4위 절단·베임·찔림

재해사례	사무보조로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다침	급식보조로 일을 하며 당근을 썰다가 칼날에 손을 베어서 다침	호텔객실관리 업무 중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묻은 못이 찔려서 다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카로운 칼, 가위 등을 사용할 때, 잠시라도 산만해질 경우 실수로 베이거나 찔릴 수 있음 날카로운 기구 및 도구 사용시 불안정한 자세로 사용할 경우 다치기 쉬움 		
재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 과일 등을 자를 때에는 베임 방지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칼은 아무데나 놓지 말고,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만 두고 사용 절단, 다듬기 등의 칼등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자신의 몸 바깥방향으로 작업 		
재해 예방 및 대책			

5위 부딪침(충돌)

<p>재해사례</p>	<p>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업무를 하다가 주차장에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쳐 다침</p> 	<p>환경정리 일을 하며 문 뒤 쪽을 청소 하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쳐 다침</p> 	<p>급식보조 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침</p> 
<p>재해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전후좌우를 잘 보지 못하면 부딪히기 쉬움 위험한 장소나 어두운 곳에서는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충돌하기 쉬움 		
<p>재해 예방 및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을 닫고 청소하되 '청소중' 표시판을 세워두고 사람이 있음을 알림 파이프 모서리와 같이 부딪힐 염려가 있는 곳에는 스폰지 등을 대고 안전하게 한 뒤 작업 '머리 조심'과 같은 표시판을 부착하여 위험한 곳이 가까울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임 도로 이동시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이동하고, 외부에서 업무 진행시 2인1조로 작업 수행 		

참고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MSDS 구성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별 제조 및 공급자 정보,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화학물질의 특성, 응급처치 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폐기시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자료를 이용하여 취급하는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 MSDS 관리 및 용기 경고 표시

- 화학물질별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MSDS 및 경고표지 예시

기타 화학용품에 의한 사고

<p>재해사례</p>	<p>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중독</p> 	<p>청소작업을 마치고 휴식 중, 음료수병에 넣어 사용하던 세제를 음료수로 오인하여 마시고 사망</p> 	<p>창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화학용품을 가지고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로 호흡기 질환</p> 
<p>재해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정제 사용 등 마스크, 장갑 등을 사용하지 않아 두통과 피부병 등에 걸리기 쉬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미 표기로 오인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작업 종류에 따른 적절하게 마스크,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 다치기 쉬움 		
<p>재해 예방 및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MSDS 작성 및 경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MSDS에 관한 교육 실시 작업종류에 따른 적절한 개인 보호구(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 지급 및 착용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메틸 알코올	67-56-1	KE-23193	1230	200-659-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메틸 알코올			
나.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물의 경우 수입 가능 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영신화학			
회사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50-3, 401-13호			
주소	내지동, 제1(안산동유류산업단지)			
긴급전화번호	031.410.8079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성: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내노출):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메틸 알코올(CAS No.67-56-1)			
			위험
유해위험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폐쇄공간 독성위험, 흡입, 피부 흡수, 삼킴 이후 경미한 중추신경계통 저하 가능 중성이 나타나지 않는 8-24시간이 지난 후 발에 대한 민감성 증가, 시각이 흐려짐, 실명 등을 비롯한 극심한 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안전 예방표지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인면보호구(필수)] 착용하십시오. 피부(또는 머리)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십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십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원을 구하십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창고에 저장하십시오. 1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을 잘기를 폐기하십시오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000-000)			

〈MSDS 경고표지 예시〉

※ MSDS 세부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 에서 확인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안전경고표시 등에 대한 세부 내용 49p~50p 참조

❖ 위험물질의 종류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등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린 등
- 산화성 액체 및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인화성 액체 : 벤젠, 염소,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톤, 크실렌 등
-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 부식성 물질 : 염산, 황산, 질산, 인산, 아세트산,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 급성 독성물질 : 경구, 경피 및 흡입독성이 기준치 이하인 물질

❖ 안전보건표지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불제이동금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음극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천식유발·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복심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의 출입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행실 등	
6. 문자추가시 예시문	<p>▶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p> <p>▶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p> <p>▶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p> <p>▶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p> <p>▶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p>		<p>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p> <p>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받지 않은 자/비밀/보안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p>		<p>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p> <p>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p>	

4.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소규모인 점과 법정 교육 의무가 있음을 감안하여 다수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활용

〈참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퀵메뉴>안전보건자료실>업종별자료>서비스업”
 L (도매업) 책자 14종, 동영상 3종, 교안 4종, 리플렛 77종, 포스터 4종 (숙박 및 음식점업) 책자 12종, 동영상 8종, 교안 6종, 리플렛 54종, 포스터 12종
 • 이외 관련 자료는 서비스업 → 공통 또는 자료실 전체자료보기에서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특정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로 인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정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운영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매뉴얼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

성희룡 예방·안전보건교육

인쇄일 : 2017년 12월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홈페이지 : vr.koddi.or.kr

연구진

손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황수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류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조은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김도형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박정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소윤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윤수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자문위원

문석인 안전보건공단 교육미디어개발부 차장

정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팀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실장

이기중 인천서구장애인복지관 팀장

신현숙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 팀장

조항주 장애인여성네트워크 연구원

삽화가 : 김성욱

편집 및 인쇄 :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